

토사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의무준수 확약서

수도권매립지에 관급토사를 반입함에 있어 SL공사 『토사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』을 준수하고 다음의 각 사항에 동의하며 토사반입 전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이에 대한 민원 및 법적(민·형사상)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

1. 공통사항

본 기관은 토사 운반자(운전자) 등 공사 관계자에게 『토사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』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2. 반입기준

SL공사 토사 반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, 토사검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합니다.
(미협조 시 출입제한) - 첨부문서 1(토사반입기준 및 반입방법)의 1, 2번 내용

3. 출입제한

본 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위반 또는 거부 할 경우, 출입제한에 동의합니다.

가. 현장여건(우천, 도로상태, 반입량 등)에 따른 상시 통제

나.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토사반입 시 - 첨부문서 1의 5번 내용

다. 토사차량 운행속도, 운행차선, 교통신호, 적재물 낙하방지 미준수 시 - 첨부문서 1의 7번 내용

1) 매립장 외 : 30km/h, 매립장 내 : 20km/h 이하

2) 운행차로 : 2차로 준수

라. 토사반출전표 필수내용 누락 시 - 첨부문서 1의 10번 내용

마. 토사운반 차량 안내비표 미부착 시 - 첨부문서 1의 11번 내용

바. 불법 영업행위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으로 토사운반 시 - 첨부문서 1의 11번 내용

4. 안전사고

본 기관은 SL공사가 사토장 부지만을 제공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토처리 과정(적재, 운반, 하역 등)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SL공사가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. 이에, 본 기관은 사토처리 과정(적재, 운반, 하역 등)에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,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2019년 7월 일

소 속 및 현장명 : 노흥건설(주) / 2019년 석촌동 외 11개동 상수도공사

부 서 및 직 책 : 공사부 / 현장대리인

성 명 : 박 선 민 (인)

